

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72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0. 12. 21

제출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사유

- 농어촌정비법의 제정으로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일부를 개정하여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농어촌정비법의 제정으로 용어의 정리 (안제1조, 제2조)
- 나. 사업비의 부과등 삭제 (안제12조)
- 다. 권리변동등의 신고의무 변경(안제20조)

3. 참고사항

- 근거법령
 -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제11조(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, 참가자격)
 - 농어촌정비법 제53조(수혜자 총회)
- 행정규제정비 - 법령 미 근거 규제 폐지
- 입법예고 (고성군 공보 제87호) - 결과 의견 없음

4. 본 문

- 덧붙임과 같음.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“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”를 “고성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제7조”를 “제9조”로 하고 “농지개량사업”을 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(이하 ‘농업기반정비사업’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2조중 “농지개량사업”을 “농업기반정비사업”로 한다.

제12조를 삭제한다.

제13조제3항중 “법132조”를 법 제53조로 한다.

제14조제1항,제3항중 “농지개량사업”을 “농업기반정비사업”로 한다

제18조중 “승한액”을 “곱한액”로 한다.

제20조중 “법 제5조”를 “법 제11조”로 하고 “농지개량사업”을 “농업기반정비사업”으로 하고 동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, 동조 제4호중 “법 제5조”를 법 제11조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명: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이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명:고성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제9조의 규정에----- ----- -----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(이하 ‘농업기반정비사업’이라 한다)을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(사업의 범위)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<u>농지개량사업</u>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제2조(사업의 범위) ----- ----- 농업기반정비사업의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사업비의 부과등) ①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구역 내에 법 제5조의 자격자에게 경비를 부과 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 경비부과총액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사비,기채원금 및 이자, 사무비,기타 이 사업수행에 필요로 하는 적절적인 경비총액에서 보조금(현물포함) 및 군에서 부담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③경비부과 기준은 토지의 평정가격 및 지적이 비례하여 부과하되 환지계획인기가 있는 후는 환지교부 기준액에 비례하여 경비를 부과한다.</p> <p>④부담금은 군수가 지시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12조(사업비의 부과등) ①(삭제)</p> <p>②(삭제)</p> <p>③(삭제)</p> <p>④(삭제)</p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⑤부담금의 체납처분,가산금의 징수 및 과오납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.</p> <p>제13조(토지의 가격평정) ①~②(생략) ③법 132조의 규정에 의한 농리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.</p>	<p>⑤(삭제)</p> <p>제13조(토지의 가격평정) ①~②(현행과같음) ③법 제53조의 규정에 ----- ----- -----</p>
<p>제14조(일시이용지의 지정) ①농지개량 <u>사업</u>시행자는 농지개량에 관한 공사가 사용허가전이라도 그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②(생략)</p> <p>③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일시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,지상권,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이용지,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등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14조(일시이용지의지정) ①농업기반정비 <u>사업</u>시행자는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는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8조(환지청산의 방법) 제17조의 정산 금액은 각 사업시행 지구내의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총액에 대한 환지의 평정 가격 총액의 비율을 종전토지 평정가격에 <u>승한액</u>(권리가격)과 환지의 평정가격과의 차액으로 한다.</p>	<p>제18조(환지청산의 방법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곱한액</u>(권리가격)과 ----- -----</p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20조(권리변동등의 신고의무) 법 제5조</u> 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는 <u>농지</u> <u>개량사업</u>의 시행지역안에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,지번,지목 및 지적 (가옥 기타공작물 포함)을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.</p> <p>1. 부담금의 부과대상인 토지가 황폐지로 되어 있을 때 또는 토지의 지목변경, 분 할 합병이 있을 때.</p> <p>2. 부담금이 부과대상인 토지가 사업시행 으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토지 로 되거나 종전토지에 비하여 현저하게 손해가 발생한 때.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<u>법 제5조</u>의 각호에 기재된 권리가 소멸 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</p> <p>5.~8. (생략)</p>	<p><u>제20조(권리변동등의 신고의무) 법 제11조</u> 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는 <u>농업</u> <u>기반정비사업</u>의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(삭제)</p> <p>2.(삭제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법 제11조</u>의 ----- -----.</p> <p>5.~8. (현행과 같음)</p>